

#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566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년 8월 31일  
제안자 : 교통위원장

### 1. 수정이유

-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보도상영업시설물의 도로점용허가 갱신시 자산가액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필요함
- 다만 자산가액의 한도를 “3억원”에서 “5억원”으로 한번에 67%를 상향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과 주택공시가격 상승률과 평균공시가격, 자산한도액 초과자의 규모, 전문가 자문의견, 시설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산가액의 한도를 “3억원”에서 “4억 5천만원”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

### 2. 주요골자

- 운영자의 자산가액의 한도(3억원 미만→4억 5천만원 미만)를 변경  
(안 제3조제3항)

### 3. 참고사항 : 생략

#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3항 중 “5억원”을 각각 “4억 5천만원”으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(의원발의안)	수 정 안(전문위원실안)
제 3 조 ( 점 용 허 가 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운영자는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제4항의 금액을 차감한 자산가액을 <u>2년</u> 마다 조회하여 그 금액이 <u>3억원</u> 미만인 사람에게 한하여 갱신을 허가한다. 다만, 자산가액 <u>3억원</u> 초과자에 대하여는 즉시 갱신제한을 하지 않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.	제3조(점용허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3년</u> ----- <u>5억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5억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	제3조(점용허가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(개정안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3년</u> ----- <u>4억 5천만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4억 5천만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본문 중 “2년”을 “3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중 “3억원”을 각각 “4억 5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